

# 서울 행정법원

## 제 3 부

[2017구합76098]

사 건 명 :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 원고1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원고보조참가인 : 원고2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 론 종 결 : 2018. 3. 16.

판 결 선 고 : 2018. 4.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망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 선박인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3. 10. 14:47경 바지 지퍼를 열린 채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해 있던 제주 ○○항 화물선부두 인근해안에서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어선원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4. '해저케이블 관리선인 이 사건 선박에서 발생한 재해는 어선원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어선법 제13조 제1항,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이므로, 어선원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해저케이블 관리 업무도 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도에 어획물운반업자인 ○○○ 등과 이 사건 선박으로 어획물운반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선주인 참가인 측은 이에 맞춰 어획물운반 업무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구입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을 어획물운반선 용도로 정비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어선원인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어업활동과 관련된 위 업무를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어선원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28조의 ' 직무상 사망한 경우 '에 해당하고, 가사 망인의 음주로 인해 그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선박의 정비·관리업무를 위해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어선원보험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 1) 관련 법리

어선원보험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고(어선원보험법 제1조), 여기서 ' 어선원등의 재해 '란 어